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 서언

치과 의료 종사자들은 치과 진료실 내에서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치명적인 AIDS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치과 진료실내에서의 질환 감염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되었다^{1,2)}. 어떤 감염질환에 있어서나 가장 좋은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질환에 대해서 면역성을 갖는 것이며, 따라서 치과 의료 종사자들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등의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 받고 있다^{3,4)}. 그러나 면역성이 없는 사람이나 현재 면역성을 가질 수 없는 감염질환들(AIDS 등)에 대해서는, 감염방지를 위한 일련의 주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며, 이는 치과 의료 종사자들을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치과 진료를 통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치과 의료 종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오염된 액체, 에어로솔, 혈액, 및 타액에 대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이용함으로써, 치과 의료 종사자와 치과 환자들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치과 진료실내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 Council on Dental Materi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그리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진료실 종사자들을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왔다⁴⁻⁶⁾. 특히 OSHA는 치과 진료실의 유해 물질의 폐기 예 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 보호 장비, 생물학적 유해물질의 표기, 및 일반적인 의무사항의 이행 등을 검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미국내의 법률적인 의견에 의하면, 진료실에서 치과 환자가 치과 의료 종사자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면, 이는 의료과오(malpractice)의 경우에 해당하며, 감염방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OSHA는 1991년 Federal Register에 “혈인

성 병원체에 대한 직업상의 노출에 대한 최종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이 규칙은 공포되기 전 검토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용이 가능한 방법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감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감염방지를 위해 이렇다 할 보사/의료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 부재는 근본적인 감염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료기관의 책임 소홀을 가져 오고, 이로 인해 의료 기관을 찾는 환자들이나 의료 기관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방지의 소홀에 따른 전반적 책임을 물기 보다는, 그 결과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만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감염방지의 궁극적인 주체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감염방지의 소홀에 따른 결과는 의료인의 책임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있을 수 없으나, 정책의 부재와 그에 따른 감염방지 체계 수립을 위한 뒷받침의 결여로 말미암아, 실제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⁷⁾,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염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염방지 학회 또는 감염방지 연구소의 설립,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 기본 감염방지 술식의 제정 공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 미국 CDC는 치과계를 위한 감염방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였다⁸⁾. CDC는 이 감염방지에 관한 권장사항에 새로운 데이터, 재료, 기술, 및 장비에 관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OSHA의 “혈인성 병원체에 대한 직업상의 노출에 대한 최종 규칙”에 부가하여 이행할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 미국 CDC의 감염방지에 대한 새로운 권장 사항과 그 한글 번역을 전제하게 된 것은 감염방지에 대한 치과계 전반의 감염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내의 감염

방지 기본 술식 제정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함이다.

REFERENCES

1. CDC: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of HIV in health-care settings. MMWR 36:(No.2S), 1987.
2. CDC: Updat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among health care workers, MMWR 37:229-234, 239, 1988.
3. CDC: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for health-care-workers. Atlanta, GA: CDC, Division of Immunization, Center for Prevention Services, 1989.
4.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1030, occupational exposure to bloodborne pathogens; final rule. Federal Register 56(235):64004-182, 1991.
5. Council on Dental Materials, Instruments and Equipment; Council on Dental Practice; and Council on Dental Therapeutics: Infection control recommendations for the dental office and the dental laboratory, J. Am. Dent. Assoc. 116:243-248, 1988.
6. CDC: Update: universal precautions for prevention of transmiss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epatitis B virus, and other bloodborne pathogens in health-care settings. MMWR 37:377-82,387-8, 1988.
7. 한길치학연구회: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편집인: 오세광, 개정증보판, 1993년 3월 1일.
8. CDC: Recommended infection-control practices for dentistry, 1993. MMWR 41(No.RR-8):1-12, 1993.